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 추가 규정〉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7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7.
3. 회부연월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 포함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신설>	11.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1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는 정부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정부는 20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7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수립·시행 중임.

[표 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주요내용

(비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

(전략)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 대국

(세부추진과제1)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세부추진과제2) [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세부추진과제3)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위기극복) 회복·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기반조성)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정책원팀 구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2023.7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제3항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②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③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④ 중소기업 판로확보, ⑤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⑦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⑧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 ⑨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⑩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 육성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의 지원 역시 정책적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연속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임²⁾.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에

2) 국회의원 오세희 보도자료, “소상공인·중소기업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받는다”, 2025. 3. 17일자.

너지 효율화”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부의 육성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등을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를 활용한 정책개발 등을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직전 중소기업 종합계획(2023~2025)에도 관련 정책을 이미 반영한 바 있으므로 차기 계획 수립시에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반영하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음.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

장을 밝힘.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9조의2제3항제12호의 경우 현행 법정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동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법」 제4조3)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책을 다루고 있다고 함.

문 의 처
02) 6788-5463

3) 「에너지이용 합리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